

백인대장 더보스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 (제8조 관련)

2020년 04월 01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시 간(분)	월교습비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분	금액(원)
보습단과	고등수학1	47	480	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2	47	1,440	3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3	47	2,160	4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수학4	47	2,400	450,000	4주	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0년 04월 01일

(√)학원설립·운영자[(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 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 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 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